



U.S. Department of Justice
Civil Rights Division



U.S. Department of Education
Office for Civil Rights

미국 법무부 인권부서
인권사무국

미국 교육부

2018년 12월 21일

동료 여러분께:

이 서신의 목적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다음의 문서들에 반영되었던 방침 및 지침에 관한 성명을 철회함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:

- 2014년 1월 8일자 학교 규율의 비차별적 관리에 관해 동료 여러분께 보낸 서신 (Dear Colleague Letter on Nondiscriminatory Administration of School Discipline); 그리고
- 2014년 1월 8일자 지원적 학교 규율 발의안 개요 (Overview of the Supportive School Discipline Initiative).

또한, 교육부는 다음의 관련 문서들을 철회합니다:

- 2014년 1월 8일자 *지도 원칙: 학교 풍토 및 규율 개선을 위한 자료 안내서 (Guiding Principles: A Resource Guide for Improving School Climate and Discipline)*;
- 2014년 1월 8일자 부록 1: *미국 교육부 연방 학교 풍토 및 규율 자료관련 디렉토리 (Appendix 1: U.S. Department of Education Directory of Federal School Climate and Discipline Resources)*;
- 2014년 1월 8일자 부록 2: 50개주, 워싱턴 D.C. 및 푸에르토리코 관련 학교 규율 법률 및 규칙 총간 (Appendix 2: Compendium of School Disciplin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50 States, Washington D.C., and Puerto Rico); 그리고

- 2014년 1월 8일자 학교 규율 지침 모음 질의 답변 (School Discipline Guidance Package FAQs).

학교 규율의 비차별적 관리에 관한 동료 여러분께 보낸 서신 (이하 "지침") 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IV (타이틀 IV), 42 U.S.C. §§ 2000c *et seq.*, 그리고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(타이틀 VI), 42 U.S.C. §§ 2000d *et seq.*, 그리고 시행 규정인 34 C.F.R. Part 100 에 준해 해당 부서들이 차별 불만을 분석하기 위해 채택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타이틀 IV은 특정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차별 불만 접수시에 공립 학교 교육위원회와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 타이틀 VI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자가 인종, 피부색,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. 지침은 타이틀 IV와 VI 에 준해 학교 규율 적용과 관련된 다수의 사실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분석했으며, 각 시나리오마다 해당 부서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들을 제시하였습니다.

2018년 3월 12일,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안전에 관한 연방 위원회 (Federal Commission on School Safety) 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지침 및 관련 문서들의 폐지여부를 포함하여, 몇 가지 쟁점들을 조사하고 권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 2018년 12월 18일, 이 위원회는 해당 부서들이 지침 및 관련 문서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

주 및 지역 학군들은 학생의 비행행동 및 규율의 특정 사례를 처리하는 방법을 비롯하여, 교육 방침을 수립하는 일과 담임 교사들이 적절한 규율 방침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데 주된 역할을 합니다. 아울러, 주 및 지역 학군들은 타이틀 VI을 포함한 연방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. 해당 부서들은 지침 및 관련 문서들이 타이틀 IV 또는 타이틀 VI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정책 선호 및 입장을 제기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
따라서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침 및 관련 문서들을 철회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해당 부서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민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고히 약속합니다. 인종, 피부색, 그리고 출신국에 의거한 차별에 대한 확고한 보호는 헌법, 타이틀 IV, 및 타이틀 VI에 의해서 보장되고, 변함없이 유지되며, 미국 내 교육 기관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합니다.

본 서한은 해당 법률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지 않으며,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 법으로 집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또는 절차적인 권리를 창출하지 않고

의도하지 않습니다. 질문이 있거나 이 서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원하시면, 교육부에 ocr@ed.gov 또는 800-421-3481번 (TDD: 800-877-8339번)으로 문의하시거나; 또는 법무부에 education@usdoj.gov 또는 877-292-3804번 (TTY: 800-514-0383번)으로 문의하십시오.

감사합니다.

/s/

케네스 마커스 (Kenneth L. Marcus)

민권 담당 차관보

미국 교육부

/s/

에릭 드라이밴드(Eric S. Dreiband)

법무장관 차관보

미국 법무부